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4. .

국무위원 박양우
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
1. 개정이유

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(법률 제16684호, '19.12.3. 공포, '20.6.4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마련(안 제61조의2)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7조의2제1항에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매수 요청시 작성 서식과 제출서류를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부처의견 조회 전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사전검토결과 규제없음.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2를 제61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61조의2) 중 “영 제47조의2”를 “영 제47조의3”, “별지 제40호의2”를 “별지 제40호의3”으로 하며,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사유지 매수 요청)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사유지 매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(위치 및 도면, 사업비,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포함한다)
2.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
3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
4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(매수를 요청하는 자가 사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포함한다)
5.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
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(임야)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 제40호의3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유지 매수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요청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사업의 명칭			
사업의 위치			
사업의 종류			
사업지 면적	○ 전체면적 m²		
	- 국·공유지 면적 m²		
	- 사유지 면적 m² (기 취득면적 m², 잔여면적 m²)		
토지의 활용계획			
토지매입 시기	. . . ~ . . .		

「관광진흥법」 제5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조성사업에 필요한 잔여 사유지 매수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(위치 및 도면, 사업비,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포함한다) 1부	수수료 시행규칙 별표 20 준용
	2.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토지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1부	
	3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1부	
	4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(매수를 요청하는 자가 사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포함한다) 1부	

처리절차

요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정 → 통보

요청인 처리기관 (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개발자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사업의 명칭			
사업의 위치			
시설의 종류			
사업지 면적			
토지의 활용계획			
토지매입 시기	. . . ~ . . .		

「관광진흥법」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라 조성사업용 토지매입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토지 매입계획서(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	2.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(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합니다) 1부	
	3. 자금계획서(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합니다)	
	4. 조성사업 예정지를 표시한 도면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정 → 승인

신청인 처리기관 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61조의2(사유지 매수 요청) ①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사유지 매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사업계획서(위치 및 도면, 사업비,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포함한다) 2.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 3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지의 위치 및 지번 4. 매수를 요청하는 사유(매수를 요청하는 자가 사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통한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포함한다) 5.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

제61조의2(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) 영 제47조의2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”란 별지 제40호의2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.	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(임야)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제61조의3(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) 영 제47조의3----- ----- -----별지 제40호의3----- -----.
--	---